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 강의중심 · 연구중심 · 산학협력중점 교원 및 특임교수 제도 도입 방안

---

2014. 4. 7.

미래위원회

- 목 차 -

I. 강의중심교원 제도 도입방안 .....	1
II. 연구중심교원 제도 도입방안 .....	5
III.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도입방안 .....	8
IV. 특임교수 제도 도입방안 .....	11
V. 붙임자료(목록) .....	15

# I. 강의중심교원제도 도입 방안

## 1. 취지

- 가. 강의중심교원(비정년트랙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제고
- 나. 이중전공(부전공), 교양 과목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제고
- 다. 2012. 5. 7. 법인 이사회 권고사항임 [“제2전공(부전공) 등의 이유로 전임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강의전담교원 제도의 도입을 검토”(동월 120(2012. 5. 7), “권고사항”]
- 라. 시간강사 폐지(고등교육법(2013.1.1.시행)에 따른 ‘강사’처우 개선 방안

## 2. 근거 법규

- 가.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 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제56조의 2(교원의 임무)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신설 2011. 11. 8)
- 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 ④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조건 및 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 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sup>1)</sup>

1) [붙임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 3. 사례

- 가. 타대학의 경우 ‘강의중심담교원’은 2년 이내 기간으로 임용되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며, 재계약 가능하고, 대체로 책임강의시수는 학기당 12시간임
- 나. 중앙대 경우 비전임으로 임용. 강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함

### 4. 강의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의 문제점

-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음

※ 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

- 나. 비정년트랙교원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로 인한 비용 절감은 대학의 교육·연구의 질을 희생시킨다.<sup>2)</sup>

### 5. 제도 도입 관련 의견

- 가. 교원임용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축성 있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나. 제도 도입 시 기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틀 내에서 도입하고, 기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가칭)‘연구·강의교원’이라 함으로써 (가칭)‘강의중심교원’과 구분 필요함

---

2) [붙임2]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 비판’ 참고

## 6. 기타 제안 및 참고 사항

###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제2조 ② '강의중심교원' 명시

제2조(자격 및 구분)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강의교원(가칭), 강의중심교원(가칭)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 제4조 ② '정년트랙' 문구 삭제

제4조 (교원트랙 전환금지)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계약기간 중 본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강의중심교원 처우(안)

명칭	현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강의중심교원(가칭)	시간강사
급여	전임교원 대비 80% 수준	전임교원 대비 50% ~ 80% 수준	전임교원 대비 30%미만 (12시간 강의시)
책임시수	7시간	12시간	9시간
연구비	지급	지급*	없음(?)
4대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없음
연구실	독립 연구실 제공	공동연구실 제공	없음
계약기간	2년	2년	1학기
재계약	불가(초빙 지원 가능)	가능	학기별 재위촉 가능
잡기비품 구입비	지급(200만 원)	없음	없음

\*연구비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교무처에서 정하도록 함

다. 타 대학의 강의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대학명	명칭	계약 기간	재계약	책임 수업시간	비고
고려대	강의계약교수	1년	가능	6시간 이상	3회 재계약 후 정년트랙 전환가능
연세대	강의전담교원	2년	가능	12학점	6년 이상 임용된 부교수 경우 4년 계약 가능
한양대	교육전담교원	2년	가능	12시간	책임강의시간 미충족시 면직가능
이대	강의중심교원	1년	가능	12시간	
단국대	강의전담교원	2년	요건 충족시 1년씩 재임용	계약으로 정함	
강남대	강의전담교원	2년	재임용 가능	15시간	
목원대	강의전담교원	1년	2년 (최대 5년)	12시간	9학점 초과시 초강료 지급
중앙대	강의전담교원 (※비전임교원)	2년	가능	12시간	연구장려금 및 비품지급

라. 강의중심교원 제도 도입 이전에 보완해야 할 사항

- 1) 강의 평가 점수가 재임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에 대비하여 강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 2) 강의중심교수 제도 도입으로 연구력 지표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중심교수도 년 1편 정도의 논문작성을 의무화하고, 우수논문 작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 3) 우수 강의중심교원에 대한 재임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기준 마련 필요<sup>3)</sup>

3) [붙임3] '연세대학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기준' 참고

# 연구중심교원제도 도입 방안

## 1. 취지

- 가. 연구력이 우수한 학자를 연구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이 강화되고, 연구중심교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실적 기준에 따라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음
- 나. 입학 정원이 적은 학과와 연구수요가 있는 연구소를 연계하여 연구중심교원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학과의 강의 및 연구력을 높이고 연구소 연구수주 역량을 제고함
- 다. 강사 처우 개선의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

## 2. 근거 법규

- ☞ ‘강의중심교원제도 도입 방안’의 근거 법규와 동일 (제2쪽 내용 참조)

## 3. 사례

타대학의 경우 주로 ‘연구중심교원’은 2년 이내 기간으로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며, 재계약 가능하고, 대체로 책임강의시수는 많지 않으나 개별 계약에 의해 강의를 담당하기도 함

## 4. 연구중심교원 제도 도입의 문제점

강의중심교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구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고, 교육부에서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처우가 열악할 경우 연구중심교원 보다는 그냥 비전임교원(시간강사)으로 여러 대학에 출강하기를 선호할 수 있음

## 5. 제도 도입 관련 의견

- 가.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나. 기존 「연구교수규정」(2007.9.1.개정시행)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2013.3.1.개정시행)의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함
- 다. 연구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관련 보완해야 할 사항

☞ 우수한 연구중심교원에 대한 재임용 및 트랙전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 개정과 함께 기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기준을 세분화하여 연구중심교원의 재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sup>4)</sup>

## 6. 기타 참고사항

###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제2조 ② ‘연구중심교원’ 명시

제2조(자격 및 구분)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강의교원(가칭), 강의중심교원(가칭), 연구중심교원(가칭)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 나. 연구중심교원 처우(안)

명칭	현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연구중심교원(가칭)	시간강사
급여	정년트랙 대비 80% 수준	정년트랙 대비 50% ~ 80% 수준	전임교원 대비 30%미만 (12시간 강의시)
책임시수	7시간	3시간	9시간
연구비	지급	지급	없음
4대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없음
연구실	독립 연구실 제공	공동연구실 제공	없음
계약기간	2년	2년	1학기

4) [붙임4] ‘연세대학교 연구전담교원의 재임용 필수연구업적’ 참고



재계약	불가(초빙 지원 가능)	가능*	학기별 재위촉 가능
집기비품 구입비	지급(200만 원)	없음	없음

\* 재임용을 위한 필수 연구업적 및 교외연구비 수주실적에 대해서는 교무처에서 결정하도록 함. 예) 2년간 최소 ? 천만원 이상의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을 요함

#### 다. 타 대학의 연구중심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대학명	명칭	계약 기간	재임용	책임 수업시간	비고
고려대	연구계약교수	1년	가능	3시간 이상	3회 재임용 후 정년트랙 전환가능
연세대	연구전담교원	2년	가능	별도로정 함	6년 이상 임용된 부교수 경우 4년 계약 가능
한양대	연구전담교원	2년	가능	별도로정 함	트랙전환 및 정년보장 가능 (탁월경우)
이대	연구중심교원	1년	가능	6시간	전공에 따라 9시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비전임교원)	1년	가능	책임시수 없음	주당 6시간 이내 강의 허용함
성대	연구전담전임교원	정년 트랙	가능	직급에 따름	
중앙대	강의전담교원 (*비전임교원)	1년	연구비지원기관 과 협약에 의함	좌측란 동일	외부연구비 지원받는과제수행

### III. 산학협력중점교원 제도 도입 방안

#### 1. 취지

- 가. 우리 대학도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 산학협력 기반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창업교육 내실화, 혁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비정년트랙전임교원)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나.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등 정부(교육부) 지원사업 수탁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종 대학평가 항목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의 평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함

#### 2. 근거 법규

- ☞ ‘강의중심교원제도 도입 방안’의 근거 법규와 동일 (제2쪽 내용 참조)

#### 3. 사례

- 가. 타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하거나 기존 전임교원 중에서 지정하고 있음
- 나. 교육부가 “산학협력중점교수<sup>5)</sup>”라는 용어를 산학협력선도대학지원사업 관련으로 사용하면서 그 인정 기준을 제시한 이후 여러 대학에서 교원임용 관련 규정 중 교원의 종류(구분)에 그 용어를 추가하고 있으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무, 임용 또는 지정 방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구체화한 대학은 중앙대학교 외에는 발견하지 못함. 그 처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다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함

5) [붙임5]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및 인정기준’ 참고

#### 4. 제도 도입 관련 의견

- 가. 2011년 하반기 이전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대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규정 정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있음. 이 제라도 정부시책에 발맞추면서 우리 대학 내부의 교수·학생들의 자체적인 요구를 파악한 후 전향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 현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명시하고,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승진승급및재임용규정」에 산학협력 활동 실적이 해당 항목에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함<sup>6)</sup>

#### 5. 기타 참고사항

##### 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안)

☞ 제2조 ② ‘산학협력중점교원’ 명시

제2조(자격 및 구분)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강의교원(가칭), 강의중심교원(가칭), 연구중심교원(가칭), 산학협력중점교원(가칭)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 나. 산학협력중점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처우(안)

명칭	현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점교원(가칭)	시간강사
급여	정년트랙 대비 80% 수준	정년트랙 대비 50% 수준	전임교원 대비 30%미만 (12시간 강의시)
책임시수	7시간	6시간	9시간
연구비	지급	지급*	없음(?)
4대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건강보험	없음
연구실	독립 연구실 제공	공동연구실 제공	없음
계약기간	2년	2년	1학기

6) [붙임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별표 4] 산학협력 업적평가표’ 참고

재계약	불가(초빙 지원 가능)	가능	학기별 재위촉 가능
집기비품 구입비	지급(200만 원)	없음	없음

\*연구비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교무처에서 정하도록 함

#### 다. 타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운영 현황

	채용형 (비정년트랙전임)	지정형 (정년트랙전임)	비전임
서울대	0	0	0
고려대	0	0	3
연세대(원주)	12	0	0
경희대	5	0	3
성균관대	8	50	13
한양대(에리카)	2	60	9
중앙대	0	0	3
이화여대	0	0	1

- 자료출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기준년도: 2013년도

## IV. 특임교수 제도 도입 방안

### 1. 취지

- 가.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할 분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제도임<sup>7)</sup>
- 나. 우리 대학 명예교수 중에서 교양과목을 담당할 자격을 갖춘 분을 특임교수로 위촉함으로써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함

### 2. 근거규정(참고규정)

- 가. 직제규정
- 나. 명예교수규정
- 다. 겸임교원규정
- 라. 객원교원규정
- 마. 시간강사규정
- 바. 초빙교원규정
- 사. 석좌교수규정
- 아. 연구교수규정

### 3. 제도 도입 관련 의견

- 가. 특임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교원인사규정에 둘 필요가 있음
- 나. 현행 「교원인사규정」은 전임교원 관련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단, 명예교수는 교원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일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근거 조항이 「직제규정」 제37조(직급)에 있으나 조항의 편제와 용어 등이 적절치 않으므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 「직제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7) [붙임7] 특임교수규정(제정안) 참고

▶ (I) 「직제규정」 및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직제규정 제37조	<p>(직급) 본 대학교 교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p>1. 교원</p> <p>가.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나. 총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수 등을 위촉할 수 있다.</p> <p>다. 전 가, 나의 교원 외에 조교를 둘 수 있다.</p> <p>라. 시간강사는 총장이 임용하되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직급) ① 교원의 직급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p>	문구 수정
교원인사규정 제3조	<p>(교원의 구분) ①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HK교원 포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p> <p>②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p> <p>② 전임교원은 정년보장임용대상 여부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HK교원 포함)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p> <p>③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p>	<p>① 항목 분리, 내용 추가</p> <p>② 문구 수정</p> <p>③ 용어 변경</p>

\* 전임교원의 직급 구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있음

\*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석좌교수는 직급이 아님

\* 조교가 교원인지 여부 확인해야함

\* 시간강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으로 이동하면 됨

\*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직위가 아니라 직급임

▶ (II)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제14장	명예교수	비전임교원	제14장 제목 변경
제46조	(명예교수) 총장은 정년퇴직한 교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명예교수규정에 의한다.	(종류) 비전임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교수 2. 특임교수 3. 석좌교수 4. 연구교수 5. 초빙교원 6. 겸임교원 7. 객원교원 8. 외래교수(시간강사)	제목 및 내용 변경
제47조		제47조 (보칙)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b>별도 규정에 의한다.*</b>	조항 신설

\* 현재 8개로 나뉘어져 있는 비전임교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V. 붙임자료 목록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시행세칙
2. 비정년 트랙 교원 제도 비판
3. 연세대학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의 재임용 기준
4. 연세대학교 연구전담교원의 재임용 필수연구업적
5. 산학협력중점교수 정의 및 인정기준
6. 중앙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별표4] 산학협력 업적평가표
7. 특임교수규정(안)